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2-17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6누49008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1. A
	2. B
	3. C
피고, 항소인	[redacted]구청장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5. 13. 선고 2015구합69119 판결
변 론 종 결	2016. 11. 22.
판 결 선 고	2016. 12. 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4. 10. 14."을 "2014. 10. 10."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2-17

피고가 2014. 10. 10.[1] 한, 원고 A에 대한 2014년 토지분 재산세 5,817,090원 및 지방교육세 1,163,410원의 부과처분, 원고 B에 대한 2014년 토지분 재산세 1,483,450원 및 지방교육세 296,690원의 부과처분, 원고 C에 대한 2014년 토지분 재산세 616,720원 및 지방교육세 123,34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3행 "2014. 10. 14."을 "2014. 10. 10."로 고침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6 내지 18행을 아래와 같이 고침

1) 건설부장관은 1971. 8. 6. 건설부고시 H로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redacted]구 F 일대 등을 도시계획시설인 'E 도시자연공원'으로 결정하여 고시하였다. 서울특별시장은 1978. 4. 28. 서울특별시 고시 I로 지적 승인을 고시하였다.

피고는 [redacted]시장의 위임에 따라 E 도시자연공원의 관리자로서 1991. 8. 8. 'E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도시공원대장을 작성하고, 그 후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편의시설, 관리시설 등을 위 도시공원대장에 등재하여 'E 도시자연공원'의 시설물로 관리

1) 갑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장에 기재된 처분일 "2014. 10. 14."은 "2014. 10. 10."의 오기로 보인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2-17

하였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5행 "을 제5" 다음에 "12, 14, 15, 16, 24"를 추가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그리고 피고는, 공원부지 소유자들인 원고들이 부지 사용에 따른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공원시설이 설치된 부지를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들은 서초구나 서울특별시로부터 이 사건 임야 또는 공원시설이 설치된 부지의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받거나 위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4. 10. 14."은 "2014. 10. 10."의 오기이므로 이를 경정한다.

재판장 판사 최상열

판사 정봉기

판사 조용래